

2024년 제2회 수원구치소 공무원(조리원) 채용 재공고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할 공무원(조리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수원구치소장

1 임용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수원구치소	공무직	조리원	1명

2 임용예정직무

- 급식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관리
- 직원식당 위생 및 청결관리
- 식자재 및 비품 관리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조건

구 분	주요 내용
신 분	· 공무원 근로자
계약 기간	· 무기 계약(정년 60세)
근무 시간	· 1일 8시간(3개조 순환근무) · 1조 06:00~15:00, 2조 09:00~18:00, 3조 10:00~19:00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순번에 따라 근무 ※ 출·퇴근시간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원구치소 복지과로 문의
기 타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지침」 등에 따름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2021.05.18.)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402호, 2022.01.18.)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음식 조리, 조기 출근(06시), 휴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가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요건 등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우대요건	• 조리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우대 ※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우대 <table border="1"> <tr> <td>산업기사</td><td>•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td></tr> <tr> <td>기능사</td><td>•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td></tr> </table>	산업기사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산업기사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가산점	• 장애인,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 우대 요건 및 가산 사항은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6명 이상)일 때만 적용함**

6 급여 및 후생복지

- 기본급(월급제) : 월 1,956,119원(라급 2년 미만, 세전 2024년 기준)
- 초과·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명절휴가비 : 연 2회 x 550,000원
- 복리후생비 : 연 1회 x 500,000원
- 고용보험 등 4개 보험 가입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7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5명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6명 이상)인 경우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적극적 서류전형)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일반 전형요소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 전형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전문 전형요소	[조리 관련 분야 근무경력 가점] •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연차별 차등우대
	[조리 관련 분야 자격증 가점] •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 장애인 가산 5% 이내	• 해당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우대 요건 및 가산 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정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채용 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04.26.(금) ~ 05.07.(화)	'24.05.01.(수) ~ 05.07.(화)	'24.05.10.(금)	'24.05.16.(목)	'24.05.24.(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9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4. 5. 1.(수) ~ 5. 7.(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649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 수원구치소 총무과 인사담당자(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031-218-7524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 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 사항이 기재되도록 상세 발부)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4대보험 중 택일)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필수	
	소득금액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필수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1부(가산 사항)	

10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05.27.(월) ~ '24.06.26.(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을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 임용시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수원구치소	조리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 사항이 기재되도록 상세 발부)	☐ 제출 ☐ 미제출
⑪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우대 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⑫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우대 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4대 보험 중 택일) 1부(우대 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⑭ 소득금액 증명서 1부(우대 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⑮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1부(가산 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성명 : (서명)

수원구치소장 귀 하

응시원서

본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를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수원구치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응시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4년 월 일 수원구치소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수원구치소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재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기관	수원구치소	응시 분야	조리원	성명	
주소					연락처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생년월일		

나. 응시요건				
응 시 요 건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응시 연 령	복 수 국 적
	☐ 예 ☐ 아니오		☐ 20세이상 ☐ 20세미만	☐ 예 ☐ 아니오

다. 우 대 사 항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라. 가 산 사 항			
가 산 요 건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서식 제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8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용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수원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수원구치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수원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원구치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